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형 감경 규정 적용 배제〉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27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5. 7. 10.
3. 회부연월일 : 2025.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한편, 「형법」은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취객의 난동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음.

이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대한 형 감경 규정 적용 배제

개정안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심신장애에 따른 형 감경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

최근 5년간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은 해마다 약 200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폭행을 행사한 사람이 음주 상태인 경우는 전체 폭행 건수의 84.6%(전체 1,243건 중 1,051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²⁾.

1)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주로 119 구급대원에게서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활동 방해 행위의 80% 이상이 폭행/상해 행위라고 설명함.

<최근 5년간 소방활동 방해행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발생건수	유 형 별				
		폭행/상해	성희롱(추행)	기물파손	진로방해	기타
계	1,377 (100.0)	1,212 (88.2)	19 (1.4)	33 (2.4)	18 (1.3)	95 (6.7)
2024년	300	250	4	4	5	37
2023년	257	222	9	7	3	16
2022년	317	288	3	9	3	14
2021년	259	232	1	10	4	12
2020년	244	220	2	3	3	16

(자료 : 소방청)

*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 건수 통계와 소방활동 방해행위 건수 통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두 통계 자료의 관리 주체가 상이하기 때문임. 소방활동 방해행위 현황 자료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건수로

<최근 5년간 119구급대원 폭행 사유(2020~2024)>

(단위 : 건, %)

구 분	음주폭행 사건비율	폭행 발생건수	폭행사유		
			음주	정신질환	기타
계	84.6	1,243	1,051 (84.6)	77 (6.2)	116 (9.3)
2024	85.8	261	224	9	28
2023	83.7	251	210	19	22
2022	85.7	287	246	21	20
2021	81.9	248	203	13	32
2020	85.7	196	168	15	14

(자료: 소방청)

한편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벌하지 아니하며(제10조제1항), 의사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제10조제2항)³⁾,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여도 음주 상태의 행위인 경우 형의 감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수 있음.

개정안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법」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소방대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 중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하지 아니한 사건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음.

3)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⁴⁾,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규정, 유사 입법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 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먼저, 현행 「소방기본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4조의2⁵⁾),

동 조문으로도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주취자에 대한 형 감경 적용 배제와 관련한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4) 헌재 1999. 5. 27. 98헌바26 전원재판부

5) 「소방기본법」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19.]

<주취자에 대한 형 감경 관련 입법례>

법 률 명	조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법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공무집행방해죄의 면제 또는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 “(1) 범행의 고의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의 만취 상태를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하고,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사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1)과(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 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⁶⁾.

소방청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폭행·협박 등에 따른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특히 폭행·협박 등에 따른 소방활동 방해 행위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음주로 인한 폭행·협박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다만, 소방청은 현행 「소방기본법」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는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⁷⁾ 이 규정을 통해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6)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중 공무원행방해범죄 양형기준 부분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1/execution_disturbance_01.jsp, 검색일 2025. 7. 14)

7)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 1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자료: 소방청)

□ 추진개요

- (추진배경) 다양한 대책 추진에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 지속 발생
 - 최근 5년간 폭행피해 총 1,178건 발생(주취자 1,002건 / 80.3% 차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203	196	248	287	245
전년대비(%)	△5.6	△3.4	26.5	15.7	△15
주취자	183건 (90.1%)	168건 (85.7%)	203건 (81.8%)	245건 (85.4%)	205건 (83.7%)

※ 2023년 폭행건수는 감소하였지만, 건수대비 주취자에 의한 폭행건수는 작년대비 비슷한 추이를 보임

* '21년 168건/248건(67.7%) → '22년 245건/287건(85.4% ↑) → '23년 203건/244건(83.7% ↓)

- (추진목표)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보장

□ 중점 추진사항

- (운영체계) 폭행사고 단계별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운영

❖ 정확한정보수집, 전파 상황대응* ⇨ 정확한 판단, 신속한 결정 구급현장대응 ⇨ 사법조치, 언론활용 전담팀대응 ⇨ 심리지원, 비용지원 등 대원보호 ⇨ 조치, 제도, 미비사항 보완 사후관리·개선

* 상습주취자, 폭행이 예상되는 신고는 접수 시점부터 다중 출동 등 선제적 상황 대응

- (안전교육)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외부강의 등) 활성화
- (중점홍보)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예방 언론매체 노출 등 대국민 홍보
- (장비보급) 폭행 상황 대비 구급차 경고·신고 장치,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 (보호강화) 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경찰 공동대응 협력 의무
- (피해지원) 휴식시간 보장, 심리 치유·치료 지원, 폭행피해 대응전담팀 설치·확대 등 모든 가용수단 지원으로 피해 구급대원의 회복 내실화

□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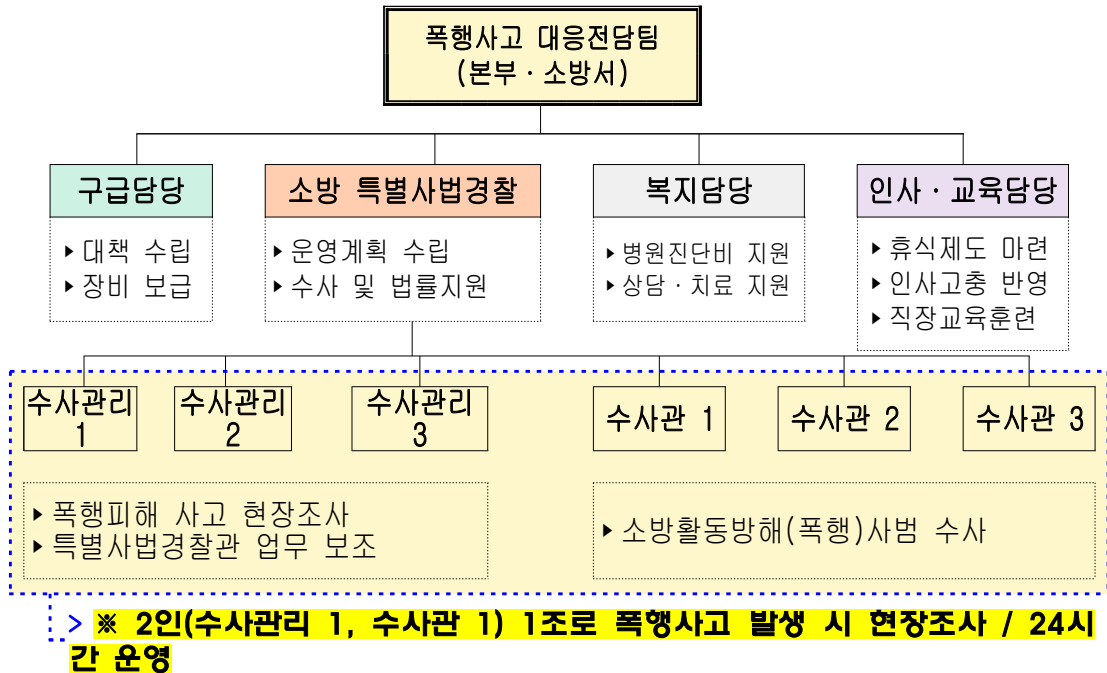
-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시·도 배포 예정(하반기)
-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한 소방본부별 자체 대책 수립·추진(연중)

참고 2

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응체계 표준모델(안)

※ 표준모델(안) 참고, 시·도 소방본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운영

폭행사고 대응전담팀 운영체계(안)



폭행사고 처리절차(안)

